

한반도의 미사일 문제: 현황과 대응방안

1997. 6.

전 성 훈
(안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민족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만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安保政策研究室

- 目 次 -

I. 문제제기	1
II. MTCR의 현황 분석	2
1. 조약 내용	2
2. 이행현황과 문제점	3
III. 남북한의 미사일능력과 대미 미사일협상	5
1. 남한	5
2. 북한	7
IV. 미국의 미사일통제정책	12
1. MTCR에 대한 입장	12
2. 대한반도 미사일정책 전망	13
V. 한국의 대응방안	16
1. 기본입장	16
2. 구체적 대응방안	18

I. 문제제기

- 1990년대 들어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¹⁾와 미사일의 확산방지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바 있음.
-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타결('94.10.21)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과정에 진입하였으나, 북한의 미사일개발 및 수출 문제가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외교·군사적 현안으로 등장함.
- 현재 남북한은 미국과 각각 양자간 미사일협상을 진행중인 바, 이는 정치·안보·경제적으로 한반도의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주요 협상의제는 남북한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가입과 미사일능력 규제임.
- 본 보고서에서는 미사일문제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감안, 한반도의 미사일 관련 현안을 검토하고 한국의 기본입장과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1948년 「유엔재래식군축위원회」(Commission for Conventional Disarmament: CCD)는 WMD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핵폭발무기, 방사능무기, 치명적인 화학·세균무기 및 상기 언급한 무기와 파괴효과에 있어서 필적하는 특징을 갖는 장래에 개발될 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은 WMD에 해당되지 않음.

II. MTCR의 현황 분석

1. 조약 내용

- MTCR은 서방 7개국¹⁾이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미사일의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지침²⁾에 합의함으로써 출범('87.4.16)함.
 - MTCR 지침은 WMD의 운반체계(유인항공기 제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의 이전을 통제함으로써 WMD의 확산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WMD의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지 않는 한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계획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

- MTCR 지침은 500kg 이상의 핵탄두를 300km 이상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500kg/300km)의 확산방지에 초점을 맞춤.
 - 1990년대 들어 제3세계 국가들의 미사일개발 문제가 현실화되자,³⁾ MTCR 회원국들은 제6차 전체회의('93.3.8~11, 캔버라)에서

2) 공식 명칭은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Guidelines for Sensitive Missile Relevant Transfers*임. 미국이 발간한 지침 전문은 *The Arms Control Reporter* (Cambridge, Massachusetts: Institute for Defense and Disarmament Studies, 1996), p. 706.D.3~706.D.4 참조.

3) 1991년 걸프전쟁 기간중 이스라엘과 사우디에 대한 이라크의 스킨드미사일 공격으로 미사일 확산문제는 미국의 핵심 안보현안으로 등장함. Lora Lumpe, *Zero Ballistic Missiles and the Third World* (Maryland: Center for International

규제범위를 화학·세균무기 등 모든 WMD의 운반이 가능한 미사일로 확대하고 수정된 지침을 시행('93.7.1)함.

- 현재 회원국은 모두 28개국이며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중국 등 3개국이 지침을 준수하는 협력국임.

2. 이행현황과 문제점

○ MTCR이 제3세계 국가들의 미사일기술 습득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미사일의 확산속도를 늦춘 것은 사실이지만⁵⁾ 보다 효과적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함.⁶⁾

- 첫째, 핵심 물품의 수출여부를 회원국 각자의 결정에 위임함으로써 규정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지침 위반시의 제재도 각국의 국내법에 의존함.⁷⁾

and Security Studies at Maryland, 1993), p. 1.

- 4)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러시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임. MTCR 가입 조건의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MTCR 준수 및 가입의사의 대내외 공표 여부, 주요 미사일 부품 및 기술의 수출규제를 위한 국내법 마련 여부, 가입희망국에 대한 회원국들의 신뢰도, 가입희망국의 MTCR에 대한 기여도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결정됨.
- 5) 아르헨티나의 Condor-2 미사일개발 취소가 MTCR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임.
- 6) Charles Petersen, "Moscow, Washington and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16, no. 2 (August 1995), pp. 46~47.
- 7) 국내법의 예로는 미국의 「수출관리법령」(Export Administration Act) 수정안과 「군비수출통제법령」(Arms Export Control Act) 수정안 등임.

둘째, 개정된 MTCR 지침은 중량과 사거리에 무관하게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조항으로서 기술후진국들의 비난을 야기할 수 있음.

셋째,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MTCR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허가는 수입국의 의도에 대한 수출국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바, 관련국간 분쟁가능성이 상존함.

Ⅲ. 남북한의 미사일능력과 대미 미사일협상

1. 남한

가. 미사일개발 현황

- 한국의 미사일능력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음.⁸⁾

<표 1> 한국 보유 미사일의 제원

Parameter	Honest John	NHK-1	NHK-A(Hyon Mu)
Type	AR	BM	BM
Launchers	12	-	-
Missiles	36	-	-
Weight(kg)	2,640	-	-
Payload(kg)	500	300	-
Range(km)	37	180	180
Propulsion	Solid	Solid	-
Status	in service	in service	in development

* AR: Artillery Rocket
BM: Ballistic Missile

8) 본 도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함. "Artillery rockets, ballistic missile, and space launch capabilities of selected countries," *The Nonproliferation Review* (Winter 1996), p. 201; *The Arms Control Reporter*, 1996, p. 706.E.2.

- 한국은 미사일개발과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 MTCR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음.
 - 한국은 1979년 NHK-1(일명 “백곰”)을 개발하면서 당시 국방장관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이전된 기술을 이용하여 500kg/18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함.⁹⁾
 - 한국 외무부도 현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같은 내용의 서신을 1990년 주한미국대사에게 보냄.
- 이상의 약속에 의거하여 한국은 군사용이건 우주개발용이건 사거리 180km를 초과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한·미 미사일협상

- 한국은 기존의 한·미간 약속을 폐기하고 MTCR에 가입함으로써 미사일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나,
 - 미국은 1996년 6월부터 진행중인 한·미 미사일회담에서 한국의 MTCR 가입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함.¹⁰⁾

9) 1996년 4월 29일 외무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10) 미국의 대한 미사일정책의 부당성과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보고서로는 하경근, 「미사일 主權과 MTCR 加入: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개정과 우리의 입장」, 국회국방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제1호, 1996년 12월 11일 참조.

○ 미국의 반대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음.

- 첫째, 미국은 MTCR 창설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남아공 등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미사일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바, 한국이 MTCR에 가입하여 미사일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원치 않음.
- 둘째, 한국이 미사일을 자체 개발할 경우 미국산 미사일의 한국 수출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경제적 요인도 작용했을 것임.¹¹⁾

2. 북한

가. 미사일개발 현황

○ 현재 북한이 보유·개발중인 미사일의 제원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음.¹²⁾

11) 한국의 한 관리가 이러한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The Arms Control Reporter*, 1996, p. 706.B.203.

12) 본 도표는 다음 논문들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David Wright and Timur Kadyshev, "An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Nodong missile," *Science & Global Security*, vol. 4 (1994), p. 132; Dietrich Schroerer, "Nuclear proliferation, missile development and the case of Korea," a paper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Nuclear Proliferation and Missile Defense System: the Case of South Korea*, organiz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Strategy in Seoul, South Korea, on May 10, 1996, p. 8; "Artillery rockets, ballistic missile, and space launch capabilities of selected countries," p. 201.

<표 2> 북한 보유 미사일의 제원

Parameter	NKScud-A	NKScud-B	NKScud-C	Nodong	Extended-range Nodong
Type	BM	BM	BM	BM	BM
No. of Stage	1	1	1	1	1
First flight test	1984	1985(?)	1990	1993(?)	-
Length(m)	11.25	11.25	12.55	15.5	15.5
Diameter(m)	0.88	0.88	0.88	1.3	1.3
Payload(kg)/ Range(km)	985/300	985/340	700/500	1,000/1,000	1,000/1,300
Dry booster mass(kg)	1,385	1,385	1,500	3,800~4,000	2,800~3,000
Propellant mass(kg)	4,000	4,000	5,000	16,000	16,000
Propulsion	Liquid	Liquid	Liquid	Liquid	Liquid
Fuel fraction	0.74	0.74	0.77	0.80~0.81	0.84~0.85
Specific impulse(s)	230	240	240	240	240
Burn time(s)	70	70	87.5	70	70
Thrust(N)	129,000	134,000	134,000	540,000	540,000
No. of engines	1	1	1	4	4
Accuracy (CEP)	0.45~1km/ range 300km	0.45~1km/ range 300km	1~2.6km	2~4km	2~4km
Reliability	Low	Low	Low	Very low	Very low
Status	in service	in service	in service	in development	in development

*BM: Ballistic Missile

- 북한의 기술 및 경제수준으로 볼 때, 대포동미사일¹³⁾의 개발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함.
 - 디라스키(Kathleen de Laski) 미국방부대변인이 대포동미사일을 “미래의 무기”(a weapon of the future)로 규정한 바와 같이,¹⁴⁾ 미국은 동 미사일이 설계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¹⁵⁾

- 북한의 미사일능력은 다음과 같은 기술적 한계와 특징을 가짐.
 - 첫째, 북한은 현재 보유한 스커드기술로 1,000kg/1,000km의 노동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바, “기술적 안정기(technological plateau)”에 도달함.¹⁶⁾

13) 노동1호와 NKScud-B를 결합한 대포동 1호는 1,000kg/2,000km, 중국의 DF-3과 노동 1호를 결합한 대포동 2호는 1,000kg/4,000km 미사일인 것으로 추정됨. Dietrich Schroerer, “Nuclear proliferation, missile development and the case of Korea,” p. 9.

14) Barbara Starr, *Jane's Defence Weekly*, March 19, 1994, p. 18.

15) “Excerpts: DOD report on weapons proliferation in Northeast Asia,” *USIA Wireless File*, April 15, 1996, p. 32.

16) Aaron Karp,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the Politics and Techn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 206. 그러나 북한의 산업능력을 고려하여 노동미사일의 개발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함. 북한이 이란에 판매한 미사일중 불량품이 많았다는 사실은 북한 미사일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줌. David Wright and Timur Kadyshev, “An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Nodong missile,” pp. 144~145; 일본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개발할 만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밝힘. “North Korean missile eyed with skepticism,” *Aviation Week and Space Technology*, October 18, 1993, p. 101; 일본 마이니찌신문 논설위원인 시게무라 토시미스도 미정보관계자들은 노동미사일을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中央公論」, 1996년 7월호; 최근 러시아 국방부관계자들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밝힌 바 있음. 「한겨레」, 1997년 5월 20일.

- 둘째, 노동미사일의 본체를 고강도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경우 사거리가 1,300km로 확장된 미사일의 개발이 가능함.¹⁷⁾
 - 셋째, 북한은 미사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발사부분에 취약한 바, 북한 미사일의 신뢰도는 매우 낮음.
 - 넷째, 정확도가 낮은 노동미사일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무기라기 보다는 인명살상용 테러무기로서의 가치를 지닐 뿐임.
 - 다섯째, 노동미사일의 낮은 신뢰도로 인해 미사일 궤적의 정확한 추적이 어려운 바, 패트리어트와 같은 미사일요격체제의 효용성은 크지 않을 것임.
- 노동미사일은 사거리가 장거리이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못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의 20~30% 정도 밖에 사거리를 하향 조정할 수 없는 바, 최대 사거리 1,000km의 미사일은 대개 700~1,000km를 공격범위로 함.
 - 따라서 북한이 압록강부근에서 노동1호를 발사해도 남한 전역은 거의 표적이 될 수 없음.¹⁸⁾

17) David Wright and Timur Kadyshev, "An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Nodong missile," pp. 144~147.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는 북한이 현재 보유한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인 바, 1,300km를 초과하는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체제를 갖추어야 함. 특히 일부 핵심기술의 습득은 기술선진국의 도움없이 불가능함. Aaron Karp,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the Politics and Technics*, p. 206.

18) 中川八洋, "「勞動1號」を迎撃できるか," 「諸君」, 1993년 9월호.

나. 북·미 미사일협상

- 제1차 북·미 미사일협상('96.4.20~21, 베를린)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 문제를 보는 양측의 기본시각에 차이가 표출됨.
 - 미국은 WMD 확산방지를 중시한 반면, 북한은 자위권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해결방안을 주장함.

- 미행정부는 북한이 이란에 대해 미사일부품을 수출하자 무기수출통제법과 MTCR 규정에 따라 북한의 창광신용회사와 이란의 국방부 군수국 및 국무부구매처에 대해 제재를 단행('96.5.24)하였는 바,¹⁹⁾
 - 북한이 미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1996년 7월중 개최 예정이던 제2차 미사일협상이 지연됨.

- 제2차 미사일협상('97.6.11~13, 뉴욕)에서도 양측은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수개월 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함.
 - 북한은 미사일수출 포기를 대가로 상당한 정치·경제적 반대급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반면에 미국은 북한의 세균·화학무기 폐기 문제도 함께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음.²⁰⁾

19) *The Arms Control Reporter*, 1996, p. 706.D.13.

20) 최근 발간된 미국의 국방정책보고서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에 심각한 우려

IV. 미국의 미사일통제정책

1. MTCR에 대한 입장

- 미국은 기술후진국들이 MTCR에 가입함으로써 미사일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함.
 - MTCR 출범 초기에도 회원국들간에 공유되는 정보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회원국수를 가급적 제한하였음.
 - 클린턴행정부는 1993년 여름 일부 국가들이 첨단 미사일기술 획득을 위해 MTCR에 가입하려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신규 회원국들에 대해 「MTCR 가입전 300km 이상의 미사일개발 포기」라는 새로운 가입기준을 적용함.²¹⁾

- 이와 관련, 개정된 MTCR 지침(제2조)은 “목적에 관계없이” 핵심 물품의 수출을 자제할 것과 WMD 운반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 “지침에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수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 미국무부는 제2조를 WMD 운반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를 표명하면서 미국의 대응능력 강화를 강조함.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1997).

21) Victor Zaborisky, “U.S.-Ukrainian talks on MTCR: is compromise possible?” *The Monitor*, vol. 2, no. 3 (Summer 1996), p. 6.

미사일 관련 물품에 대해서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관계없이 수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함.²²⁾

- 제2조는 우주개발계획을 저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기술선진국들의 기술이전 거부를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

2. 대한반도 미사일정책 전망

○ 미국은 아인혼(Robert Einhorn) 국무부부차관보를 북·미 및 한·미 미사일회담의 미측 수석대표로 참석시키고 있음.

-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일관된 미사일통제정책을 가지고 남북한을 상대하고 있음을 반증함.

○ 미국은 미사일확산 방지라는 목표하에 이미 기술을 축적한 국가에 대해서도 기술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입장은 남북한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임.

- 예를 들어, 미국은 첨단 미사일기술을 보유한 채 MTCR에 가입

22) "New MTCR restrictions focus on intent instead of range, payload," *Aerospace Daily*, January 11, 1993, p. 43. 즉 미국은 개정된 지침에 의거하여 규제대상국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WMD 운반에 이용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관계없이 수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함. Jon Wolfsthal, "MTCR members agree on new export restrictions," *Arms Control Today*, vol. 23, no. 1 (January /February 1993), p. 22.

○ 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능력을 300km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의 MTCR 가입에 반대하고 있음.

○ 반면에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특별우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각국의 지위를 차별화하고 있음.

- 규제대상국의 WMD 개발 의도에 대한 수출국의 주관적 판단을 허용하는 MTCR 규정으로 인해 미국의 차별화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임.

○ 미사일문제는 핵문제와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 바,²³⁾ 미국은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견지했던 것과 같은 목표와 전략하에 한반도의 미사일문제에 대처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들어 남한의 재처리·농축 포기선언을 이끌어내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남북한으로부터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한 재처리·농축시설의 공동포기를 유도함.

- 이로 인해 남북한의 평화적 원자력이용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

○ 미국은 남북한의 미사일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

23) 미사일기술은 민·군 양면성을 갖고 있고, 남북한이 미사일능력의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은 남북한의 미사일능력을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핵기술과 유사함.

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음.

- <제1단계>: 한·미 미사일회담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능력을 최대 300km²⁴⁾로 동결하면서, 북·미 미사일회담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수출을 저지하고 미사일능력을 현 수준으로 동결함.
- <제2단계>: 남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개발을 제한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토록 하여 북한의 미사일동결을 확고히 하고 더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능력을 남한수준으로 끌어내리도록 유도함.
-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과거 미사일개발 활동에 대한 의혹을 남겨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반면에 미국은 주한미군 무기와의 호환성 등을 이유로 한국이 자국산 미사일을 구매하도록 강요할 것임.

- 최근 한국의 휴대용미사일 구매 계획을 둘러싸고 미행정부가 노골적인 구매압력을 가한 바 있음.²⁵⁾

24) 한국의 MTCR 가입시 사거리 300km 이상되는 미사일개발을 금지하는 조건이 첨부될 것으로 예상됨.

25) 「중앙일보」, 1997년 6월 14일.

V. 한국의 대응방안

1. 기본입장

가. 신중 대처

- 남북한이 모두 MTCR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미사일 협상을 진행중인 바, 핵문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미사일기술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을 위한 필수기술이므로 군사적 전용가능성 때문에 평화적 이용권한을 제약받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특히 북한의 미사일능력이 한국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점에서 한국의 신중한 대처가 필요함.

나. 화학무기 우선 규제

- 서울이 북한 장거리포의 사정권 내에 있고 남한 전역이 북한 항공전력의 공격가능권 내에 있으므로 미사일보다 화학무기가 한국의 안보에 더 큰 위협임.
 - 따라서 북한이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가하고,²⁶⁾ 향후 남북한 군사협상에서 화학무기 폐기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어야 함.

다. MTCR 지지 및 가입 추진

- 한국은 MTCR 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MTCR 정규 회원국의 지위를 확보해야 함.
 - MTCR 가입이 첨단 미사일기술 도입과 우주산업개발에 장애를 조성한다는 국내 학계와 정계 일각의 우려는 MTCR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함.²⁷⁾
 - 한국은 현재 MTCR 회원국들로부터 미사일 관련 부품과 기술의 수입시 규제를 받고 있는 바, MTCR에 가입해야 선진기술 습득의 우호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음.

- 한국이 MTCR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기술선진국으로부터 첨단 미사일기술을 보다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
 - 둘째, 국제적으로 진행중인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계획에 보

26) 한국은 1993년 1월 14일 CWC에 서명하고 1997년 4월 28일 비준서를 기탁함.

27) 예를 들어, 하경근, 「미사일 主權과 MTCR 加入: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개정과 우리의 입장」, pp. 22~23 참조.

다 쉽게 동참할 수 있음.

- 셋째, MTCR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부권을 확보함으로써 MTCR 회의에서 한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함.
- 넷째, MTCR 회원국들과 북한간의 교류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북한 수출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북한의 군사용미사일 개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2. 구체적 대응방안

가. 미사일외교의 창구다원화 모색

- MTCR 신규가입 문제가 단일 회원국의 거부권에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MTCR 가입외교가 미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될 것임.
- 한국은 대미 외교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외교채널을 다변화함으로써 다른 회원국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미 압력을 유도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함.
 - 특히 기술선진국들간에 특정 물품의 수출허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바,²⁸⁾ 이러한 기술선진국들간의 갈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

나. 미사일개발의 당위성 확보

- 미사일규제의 목적은 중장거리 운반수단인 미사일에 WMD를 탑재하여 야기되는 군사적 위협을 차단하려는 것임.
 - 미사일규제는 WMD 확산방지를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 특정 국가의 미사일능력이 군사적 위협가능성을 이유로 무조건 차단되는 것은 불합리함.

- 한국은 WMD의 개발·보유를 완전히 포기하고 관련 비확산체제(NPT, CWC 등)에 모두 가입했으므로
 - 미사일기술과 장비를 습득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갖고 있음을 기술선진국들에게 강조해야 함.

- 21세기 초 국제우주시장이 연간 2,000억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²⁹⁾되는 가운데 한국은 인공위성의 독자적 발사를 위한 미사

28) 브라질과 인도에 *Viking* 액체연료로켓모터를 판매한 프랑스, 인도에 저온로켓 부스터를 판매한 러시아 및 사우디에 중거리탄도미사일 CSS-2를 판매한 중국 등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강행함으로써 마찰이 발생한 바 있음.

29) 세종연구소 구상회박사와의 의견교환, 1997년 6월 9일.

일능력을 구비해야 하는 바,

- 미사일기술은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미사일개발을 정당화해야 함.

다. 군사적 및 평화적 이용의 분리입장 천명

- 한국은 군사적 목적의 미사일개발은 엄격히 규제하되 이로 인해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계획이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천명함.
- 미사일의 군사적 및 평화적 이용의 분리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 다음 두 가지 논리를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미사일의 군사적 위협은 사거리가 아니라 WMD 탄두의 탑재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함.
 - 이미 WMD 개발·보유를 완전히 포기한 한국이 미사일개발을 일방적으로 규제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국제사회는 한국과 같은 WMD 완전포기국의 평화적 우주개발 계획을 적극 지원해야 함.
- 둘째, 미사일과 WMD는 기술적으로 상호연계성이 없는 바, 미사

일에 대한 연구개발을 WMD 확산과 동일시할 수 없음.

- 북한의 노동미사일에 대한 우려는 미사일개발 자체보다는 북한이 WMD를 개발·보유하면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라. WMD 보유국과 비보유국 차별화 요구

- 기술선진국들이 WMD 보유국과 비보유국에 대해 다른 미사일 통제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함.
 - WMD의 개발가능성이 전무한 국가에 대해 무리하게 MTCR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해당국의 평화적 우주개발계획이 원천봉쇄되고,
 - 우주개발 분야에서 기술선진국들에 종속되는 상황을 야기할 것인 바,
 - MTCR의 차별성에 대한 비판과 기존 비확산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마. 군사용미사일 규제선언 발표

- 한국은 미사일개발에 대한 평화적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WMD 운반이 가능한 장거리 군사용미사일

의 생산·보유 금지선언」을 발표할 필요가 있음.

- 브라질의 칼도소(Fernando Cardoso) 대통령도 유사한 내용의 선언을 발표('95.8)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함.
- 자국의 미사일개발이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에 국한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 브라질은 MTCR에 가입('95.10.11)함.

바. 남북한의 평화적 우주개발 협력 추진

- 남북한은 미사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
 - 한국은 남북대화 재개시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과 위성발사 연구를 위한 남북한공동협약체 구성을 북한에 제의해야 함.
 - 이와 관련, 한국은 뒤떨어진 미사일기술을 만회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미사일능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남북한이 군사용미사일 규제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도 평화적 의도를 입증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사. 북·미 미사일회담의 확대 방지

- 북·미 미사일회담의 의제를 군사당국자간 접촉을 포함한 양국간

의 다른 현안으로 확대하는 것은 방지해야 함.

- 미사일회담의 의제 확대는 동 회담을 포괄적인 회담으로 변형시켜 북·미 관계의 급진전을 초래할 수 있고,
-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한반도 안보체제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民族統一研究院 發刊資料目錄

〈세미나시리즈〉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研究報告書〉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 96-18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96-1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 96-27 한·일 안보협력 방안 연구
-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 96-29 한·중 안보협력 방안 연구

〈統一情勢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 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 日本總選 結果分析
- 96-09 美國 大統領 및 議會 選舉 結果分析
- 97-01 대만核廢棄物 북한搬入의 問題點
- 97-02 鄧小平사후 中國의 내정과 한반도정책 전망
- 97-03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 동향과 전망
- 97-04 한반도의 미사일 문제: 현황과 대응방안

〈年例情勢報告書〉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論叢〉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統一研究論叢 第5卷 2號(1996.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1996)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96-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북한인권백서 1997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한반도의 미사일 문제 : 현황과 대응방안

統一情勢分析 97-04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安保政策研究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0-4300(代)

印刷處 성진문예사 전화 : 266-3033

印刷日 1997년 6월 일

發行日 1997년 6월 일
